



실속있는 법률 시행을



오 세 익

2년여를 끌어오던 '출판 및 인쇄진흥법안'이 마침내 지난 7월 31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빛을 보게 되었다.

인쇄업계와는 거리가 있는 도서정가제 문제를 놓고 온라인 서점업계와 오프라인 서점업계의 침해한 대립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반대로 지루한 줄다리기를 벌여왔으나 법 제정을 위한 문화관광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관련업계의 협조로 난산 끝에 결실을 보게 되었다.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 제정을 거쳐 내년 2월중순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률이름은 '출판 및 인쇄진흥법' 이지만 관련업계의 이해관계가 얹힌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인쇄업계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법은 목적에서 '출판·인쇄에 관한 사항 및 출판·인쇄문화산업의 지원·육성과 간행물의 심의 및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못박고 있으며 문화관광부장관은 출판문화산업과 인쇄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기본시책을 매 3년마다 수립, 시행토록 하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문화관광부장관은 출판·인쇄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여야 하며 국제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문화관광부장관은 출판사 및 인쇄사의 시설 및 유통 현대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출판·인쇄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출판·인쇄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년동안 인쇄업계 대표들로 구성된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정 추진위원회'를 가동하면서 노력해 온 단독법률 제정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 일단 법률에 기댈 수 있는 명분과 기반은 갖췄다고 보아도 무방하겠다.

그러나 문제는 이제부터이다. 모름지기 모든 법률이 다 그러하지만 아무리 좋은 내용을 담고 있어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면 死文化된 허지조각에 불과할 따름이다.

공청회 등에 인쇄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시행령과 운영규칙 등에 인쇄업계 실정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만히 있다가 잘못된 부분만 침소봉대 한다거나 아웃사이더로 행세하면서 비판을 위한 비판만 일삼는 것은 진정한 문화인의 자세가 아니다.

지식의 결집을 통한 인쇄업계의 경쟁력강화가 시급한 과제이며 인쇄관련 매체의 제대로 된 시대적 자리매김을 위해 '프린팅 코리아'는 힘들지만 보람된 길을 걷고자 한다. <편집주간>